



재정경제부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 2006.08. 29(화) 13:30

-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경부

생 산 일	'06. 8. 29	생산부서	국고국 회계제도과
담당과장	장훈기(T:2150-2460)	담 당 자	고상진(T:2150-2462)

제목: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시행

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29일 12:00부터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「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」에 대하여 논의하였음

* 참석자

- 당 측 : 김한길 원내대표,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, 재경위원
- 정부측 : 경제부총리, 차관, 건교부차관, 정책홍보관리실장 및
관련국장

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하여 건설업체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뜻을 같이 하고,

- 금년 중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회의에서 결정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음

주요내용

<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>

-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[현행 50억원→개방 대상 고시금액('06 : 84억원)*]

* '07년부터는 환율변동에 따라 75억원 내외 예상

-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(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→2억원)하고,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소재 업체들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함

- 기술이 일반화된 공사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**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(PQ) 대상 공종**에서 제외(상하수도 공사등) → 중소기업 설업체 수주대상 범위 확대
-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**대금지급기한 단축**(현행 청구후 14일이내 → 7일이내)
- 건설업체에 대한 **상시점검등 등록요건 관리강화**를 통한 Paper Company 근절 →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건설한 지방 중소기업설업체 보호

<공공 건설부문 발주규모의 안정적 유지>

-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**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한도를 최대한 집행하여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**
 - 내년부터는 동 한도를 증액하여 활용 검토
- '06년 하반기 공공부문 발주예정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독려
- **국유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건설투자지원 강화** 및 임대주택 등 공급을 위한 노력 병행

(예) 도심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용 상가주택 개발,
우체국사 신·증축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검토

-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 예산이 아닌 **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**
 -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독려(사업규모가 축소조정 되지 않도록 조치)

<별첨>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

당정협의자료

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

2006. 8. 29

재정경제부

목 차

I. 공공건설부문 현황 1

II. 개선방안 4

1.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 4

2. 공공부문 기성고의 안정적 유지 6

III. 향후 추진계획 7

I. 공공건설부문 현황

1] 공공건설 발주규모 감소 추세속에 발주 지연

○ 연간 공공건설부문 발주규모는 40조원~50조원 규모로서, 04년 이후 감소 추세

* 연간 총 발주규모 변동추이 (조원)

· 38.5('02) → 38.1('03) → 44.5('04) → 41.9('05) → 40.2('06 예정)

* 06년 공공공사(조원) [국가(8.7), 지자체(14.8), 정부투자기관등(16.7)
수송·교통등 SOC(15.8), 청사건축등 비SOC(24.4)

○ 5.31 지방선거, 발주제도 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금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발주도 부진

* 연도별 상반기(1월~6월) 공사 발주규모 비교

(단위 : 조원)

구 분	'04	'05	'06 ('05년동기대비)
전 체	44.8	55.1	49.6 (-9.9%)
민 간	28.5	35.7	32.9 (-7.8%)
공 공	16.3	19.4	16.7 (-13.9%)

* 금년도 공공부문 월별 수주규모(조원)

: 2.1(1월) → 2.8(2월) → 1.7(3월) → 3.0(4월) → 4.7(5월) → 2.4(6월)

- 다만, 연간 발주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40.2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발주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* '06년 발주예정금액 : 상반기 16.7조원 → 하반기 23.5조원

2] 건설업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전환('97)되면서 건설업체의 난립
→ 과당경쟁으로 1사당 수주금액 급감

○ 건설업체의 난립(05년 일반건설업체 13,147개)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(Paper Company)까지 양산

- 공사를 수주한 Paper Company는 실제 시공업체에게 공사 수행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액의 공사비(약 20%수준 추정)를 수주대가로 취득

- 실제 시공업체의 수입은 적정공사비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 재정난에 직면

※ 연도별 총 수주규모 및 일반건설업체 1社당 수주현황

구 분	'97	'01	'03	'05
총 수주규모(A, 조원)	35.4	29.9	32.2	31.8
업체 수(B, 개)	3,896	11,961	12,996	13,147
1사당 수주규모(A/B, 억원)	90.9	25.0	24.8	24.2

③ 수주 양극화 심화 등으로 지방 중·소건설업체 수주물량 감소

○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SOC, BTL, 해외공사 등 수주여건이 다변화되어 있으나, 주로 공공 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 부족현상 심각

○ 더욱이 공공부문도 30위이내의 대형건설업체가 전체(32조원)의 62%를 수주('05년도)

※ 대형건설업체(시공평가액 30위이내)의 수주규모('05)

(단위 : 조원)

구 분	총 규모(A)	대형건설사 수주(B)	B/A(%)
공공	31.8	19.8	62.1
민간	67.6	44.3	65.5
계	99.4	64.1	64.5

II.

개선 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◇ 공공부문 발주 규모의 적정화 및 기성고 확보 노력 강화
 - SOC 신규사업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, 공공부문 발주 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, 계속공사비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성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
 - * 신규사업물량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물량 급변동은 오히려 건설업체를 어렵게 할 우려
 - * 국토 면적당 도로연장(km/km², 03,OECD)
: 한국 0.88, 미국 0.69, 독일 0.65, 일본 3.19
- ◇ 건설업 전체 보다는 지방건설업에 초점을 맞추어 활성화 방안 마련

1.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

①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(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)

- 현행 50억원미만 → WTO 협정에 따른 개방고시금액*('06년 현재 : 84억원)미만으로 상향조정

* 매 2년마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시하며, '07~'08간 적용될 금액은 '06년말에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(원화강세 요인으로 75억원 내외 전망)

※ 대상금액 상향조정(전제 : 50억→80억)으로 인한 추가확대 공사규모

<단위 : 억원>

구 분	중앙정부	정부투자기관	합 계
50억원 규모(A)	12,668	10,418	23,086
80억원 규모(B)	16,528	12,893	29,421
추가규모(B-A)	3,860	2,475	6,335

② 기초자치단체(시·군) 소재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소액수의 계약금액 상향조정(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)

- '98년 마지막으로 조정한 소액수의계약대상금액을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,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향조정(일반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→2억원)

※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(안)

(단위: 억원)

구 분	공 사			물품·용역
	일반	전문	정보통신 등	
현행 한도액	1	0.7	0.5	0.3
상향조정금액(안)	2	1	0.8	0.5

- 동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(시·군) 소재 업체에 한하여 실제 수주가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방안 검토

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(PQ) 대상공종 축소 개선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)

- 기술적으로 보편화, 일반화된 공사*를 고난이도 PQ대상공종(22개)에서 제외

* 예 : 상수도·하수도·공용청사·공동주택·하수종말처리장

⇒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중소건설업체 수주확대 지원

④ **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하여 대금지급기한 단축**(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)

- 국가계약법령상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공급업체 등에 대한 **대금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**

* 중기특위 및 조달청 등 관계기관들도 14일→7일로 단축건의

- 현행 대금지급기한이 장기(대금 청구 후 14일이내)인 관계로 업체,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자금회전에 애로

⇒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소액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경우 7일 범위내에서도 **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게** 하는 내용을 대금지급 관련 회계예규 등에 명시

⑤ **건설업체 등록관리 강화**(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)

- **실태조사를 통해 요건 미달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Paper Company 근절대책 강력추진**(건교부 입법예고 중)

- 건설협회 등 건설업 관련단체에서 **상시점검토록**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취소등의 실효성 확보

- 건설산업정보를 연계하여 부실업체 적발자료로 활용*

* 발주기관- 건설협회 - 공제(보증,보험)기관 간 정보연계

2. 공공부문 기성고의 안정적 유지

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한 공공 기성공사 물량 확보

-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('06년 : 일반국도 4,000억원)를 내년부터 증액하여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
- 아울러 '06년 공공부문 발주예정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독려

* 하반기중 발주예정금액 : ('05) 22.5조원 → ('06) 23.5조원

②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건설투자지원 강화

- 일정규모이상 단독주택·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국유지가 포함된 경우 매각허용(기시행)
- '05년 남대문세무서부지 등 3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중 추가로 2~3건의 개발사업을 발굴·추진
- 도심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용 상가주택 개발
- 우체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검토

③ 계속비 계약제도 활용 활성화

-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 예산이 아닌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
-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, 2차년도 이후 차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독려(사업규모가 축소조정 되지 않도록 조치)

Ⅲ.

향후 추진계획

구 분	주요 추진내용	소관 및 협조부처	비 고
지역중소 건설업체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조정 -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-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 축소 - 대금지급기한 단축 <p>*국가계약법시행령, 규칙 개정</p>	재정경제부	'06년 하반기부터 시행
	<p>건설한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Paper Company 근절</p> <p>*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</p>	건설교통부	'07년 초 시행
공공부문 기성고의 안정적 유지	<p>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한 공공 기성공사 물량 확보</p>	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	'07년 부터 시행
	<p>국유지를 활용한 공공 분야 건설투자지원 강화</p>	재정경제부/ 정보통신부	'06년 하반기부터 시행
	<p>계속비계약제도 활용 활성화</p>	기획예산처/ 각 부처	매년